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 제공한 경우, 세관장이 기계장치 수입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781, 2023.01.26

질 의

-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사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일괄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 감독 및 시운전 업무는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을 통해 수행하고
- 외국법인 본점이 장비대금 및 설치에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을 수취하고, 세관장이 고객사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계장치(이하 "장비")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대금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장비대금 및 장비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해당 장비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773, 2023.01.17

질 의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면법인-4417, 2022.12.06

질 의

- 콘도 재건축을 통해 콘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갑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
(을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회 신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 미니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467, 2022.12.09

질 의

- 질의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의료사업을 위해 '△△.△△.△△. 취득한 병원부지 및 건물'을 '△△.△△.△△. 〇〇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〇〇억원을 포함하여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

질의

-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유형자산(토지·건물)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